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관련 1320
--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3. 12. 18.
제 안 자 :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“사업시행인가”를 “사업시행계획인가”로 변경하고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전부개정(2018. 7. 19.) 사항을 반영하여, 인용 조항 번호를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제5조제1항제13호 중 “사업시행인가”를 “사업시행계획인가”로 하고, 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“제7조”를 “제11조”로 함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
이 수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3호 중 “사업시행인가”를 “사업시행계획인가”로 하고,

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“제7조”를 “제11조”로 함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) ① 영 제10조제1항 제5호에서 "그 밖에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 1.~2. (생략) 13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및 제74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의 변경 14.~16. (생략) 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"그 밖에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 1.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(이하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라 한다)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.~6. (생략)	제5조(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~2. (현행과 같음.) 13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및 제74조에 따른 <u>사업시행인가</u>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의 변경 14.~16. (생략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.~6. (생략)	제5조(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~2. (개정안과 같음) 13. ----- ----- --- <u>사업시행계획인가</u> -- ----- 14.~16. (생략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-- ----- <u>제11</u> 조 ----- ----- 2.~6. (생략)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1항 중 “법 제7조제6항”을 “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1항제10호”를 “법 제9조제1항제10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“다만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제1항제8호”를 “다만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제1항제8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3호 중 “사업시행인가”를 “사업시행계획인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4호 중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4항”을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4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5호 전단 중 “존치관리구역에서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”를 “존치관리구역에서 「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

제5조제2항제5호 중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4항”을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제1호 중 “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21조제1항”을 “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21조제1항”으로 하고,

제19조제2항 중 “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4조”를 “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4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의2(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) ① <u>법 제7조제6항</u>에서 “시 · 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과반수를 말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2조의2(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) ① <u>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</u>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 제6항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)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“그 밖에 시 · 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</p> <p>1. <u>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</u>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·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10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인구 · 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. 다만, 「서울특</p>	<p>제5조(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법 제9조제1항제10호-----</p> <p>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>-----.</p> <p>다만, 「서울특</p>

<p><u>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</u></p> <p>4. ~ 12. (생략)</p> <p>13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및 제74조에 따른 <u>사업시행인가</u>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의 변경</p> <p>14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(존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)</p> <p>15. <u>존치관리구역에서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결정절차를 이행하고 심의를 완료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. 이 경우, 주민의 의견을 들은 이후 해당 자치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u></p> <p>16. (생략)</p> <p>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“그 밖에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</p>	<p><u>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제1항제8호-----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4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13. -----</p> <p>----- <u>사업시행계획인가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4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4항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5. <u>존치관리구역에서 「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-----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
---	---

에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(이하 “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”라 한다)
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

2. ~ 4. (생략)

5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(존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)

6. (생략)

제10조(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) ① (생략)
② 영 제2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주차장설치기준의 완화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제한지역으로 간주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21조제2항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.

-----.

1.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4항 -----

6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-----

-----.

1.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21조제1항-----

-----.

2. (생 략)

제19조(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해당 설치비용 잔액에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른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2.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4조-----

---.